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 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 송석준·강기윤·강대식

강민국・곽상도・구자근

권명호 · 권영세 · 김기현

김도읍・김미애・金炳旭

김상훈 · 김석기 · 김선교

김성원 · 김승수 · 김영식

김예지 · 김용판 · 김 웅

김은혜 · 김정재 · 김태흠

김형동 • 김희곤 • 김희국

류성걸 • 박대수 • 박대출

박덕흠 • 박성민 • 박성중

박수영・박완수・박 진

박형수 • 배준영 • 배현진

백종헌 • 서범수 • 서병수

서일준 · 서정숙 · 성일종

송언석 • 신원식 • 안병길

양금희 · 엄태영 · 유경준

유상범 • 유의동 • 윤두현

유영석·윤재옥·윤주경

윤창현 • 윤한홍 • 윤희숙

이달곤 · 이만희 · 이명수

이양수・이 영・이 용이 이종배・이종성・이주환이 기존대・이철규・이헌승이 시청 이 전봉민이 전우혜 · 정경희 · 정동만전주혜 · 정점식 · 정진석정한민 · 정희용 · 조경태조명희 · 조수진 · 조대용조해진 · 주호영 · 지성호최승재 · 최충식 · 최형두추경호 · 태영호 · 하영제하대경 · 한기호 · 한무경하면 아 · 홍문표 · 홍석준황보승희의 의원(10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초유의 감염병 유행으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지역보육·교육기 관들이 일제히 휴원, 휴교하면서 자녀를 장기간 자택에서 보살펴야 하 는 근로자 가정은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	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
등을 위한 지원) ① ~ ③ (생	등을 위한 지원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	4
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	
다음 각 호에 따른다.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족돌
	봄휴가 기간은 「감염병의 예
	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
	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
	행하여 휴원 또는 휴교 조치
	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
	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
	<u>기간으로 할 것</u>
⑤ ~ ⑨ (생 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